

■ 논 단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중심성지수 분석*

지 인 엽(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변호사(호주), 경제학박사)

최 승 재(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이 준 형(동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석과정)

요 약 문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동일인지정제도는 자연인을 지배구조 정점으로 보아, 기업집단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인을 동일인관련자로 지정한다. 이 제도는 40여 개 법령에서 준용되는 만큼 제도가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다. 이에 본고는 동일인지정제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중심성지수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 제도의 규범적 인식과 제도와 현 규제 환경 간 일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배우자·혈족 1~4촌에 비해 인척·임원의 지분은 동일인의 지배구조 유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척·임원의 지배구조 기여도는 2022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혈족 5~6촌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년간 정부가 지주회사 유도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집단이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 정점을 법인으로 보아 지주회사를 동일인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제어 : 동일인지정제도, 중심성지수, 경제력 집중, 기업집단, 동일인

* 본 연구논문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目 次〉

I. 들어가며	2. 동일인관련자 범위 분석
II. 동일인지정제도 개관	IV. 지주회사제도와 동일인지정제도
1. 현행법에 대한 검토	1. 지주회사제도 개관
2. 소결	2. 기업집단 지배구조 변화 분석
III. 동일인관련자 범위 분석	V. 맺음말
1. 중심성지수 방법론	

I. 들어가며

경제력집중 현상은 독일,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여러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¹⁾²⁾ 경제력집중 규제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경제력집중이 시장기능 위축, 자원분배 왜곡을 야기하므로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³⁾

우리나라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서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일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이나 법인⁴⁾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여 동일인과 그의 경제적 이해관계자인 ‘동일인관련자’의 소유를 분산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경제적 동일체를 형성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는 규제대상을 판단

-
- 1) Claessens, Stijn, Simeon Djankov, and Larry HP Lang,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제58권 제1-2호(2000), 82면;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 de Silanes, and Andrei Shleifer,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The journal of finance」, 제54권 제2호(1999), 472면.
 - 2)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30대 기업집단 자산이 1987년 55.3%에서 2016년 100.3%까지 증가하였다.(위평량,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그 동태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개혁리포트, 2018, 2면.) 또한 30대 기업집단이 전체 상장사 매출액 72.6%를 차지하고 있다.(Bae, K. H., Kang, J. K., & Kim, J. M., "Tunneling or value added? Evidence from mergers by Korean business groups", The journal of finance, 제57권 제6호(2002), 2699면.) 2018년 기준으로 10대 기업집단 시가총액 비중은 약 51.3%이다.(한국거래소 보도자료,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및 추가등락 분석", 2018.)
 - 3) 권오승,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6호(2019), 8-12면; 송태원. (2015).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출자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일고. 동아법학, (69), 231-264면.
 - 4)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기업집단의 지분구조 등을 감안하여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존재한다.

하는 준거점이 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확장한다. 계열회사들은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관계 해소,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동일인지정제도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법」 등 40여개의 법령에서 준용되므로, 이 제도가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및 지배구조 변화 등 규제환경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역외규제 한계이다. 이는 기업집단 영업활동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국외 거점을 둔 기업집단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를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⁶⁾ 무역, 조세 등 분야는 국가 간 조약 체결을 통해 역외규제 내용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만,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인 법 집행에 제약이 있다.

둘째, 동일인관련자 범위 적정성 문제이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전제한다.⁷⁾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동일인관련자의 소유지분을 동일인의 우호지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동일인관련자 지배력 보조여부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임원의 개인 사업체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당했으나, 해당 사업체는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⁸⁾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룬다. 첫째는 중심성 지수를 바탕으로 한 동일인관련자의 객관적 범위 확정 방안에 대한 제언을, 둘째는 지주회사형태의 경우에는 법인을 지정하는 제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 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완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지주회사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추후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개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계량적인 방법론을 통해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김우진·이은정·최난설현(2020)은 중심성지수를 활용하여 공정위 동일인 지정 방식이 자의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밝혀낸 바 있다. 이 연구는 기업

5) 전경련,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와 개선과제”, 규제개혁시리즈(2008.5), 3면.
 6) 일례로 공정위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한 바 있다.
 7) 김봉철, “경제/기업법령상 친족인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2009), 260면.
 8) 서울신문, “얼굴도 모르는 친척도 총수 책임?...공정위 ‘동일인’ 과잉 규제”(2023.01.25. 방문)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4008004&wlog_tag3=naver>

집단 범위 확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지정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업집단 범위 확정의 또 다른 기준인 동일인관련자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전찬수(2022)는 동일인관련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규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규제대상도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제시에 그쳐, 동일인관련자 범위 축소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기업집단 규제는 본질적으로 사전규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 대상자들이 규제 여부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법 운용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심성지수와 같은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동일인 지배력 및 동일인관련자 지배력 보조 여부를 평가하여, 규제 여부와 범위에 대한 규제 대상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우선 II장에서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관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Almeida et al. (2011)의 중심성지수와 분석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배구조 기여도'를 정의하여 동일인관련자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현행법의 일치성을 실증분석한다. IV장에서는 지주회사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정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결론짓는다.

II. 동일인지정제도 개관

동일인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도입되었다. 동일인에 대한 정의 규정은 따로 없으나, 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 정의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의된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되며(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 이를 통해 동일인을 '기업집단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⁹⁾ 개념적으로 기업집단 지정에는 동일인 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¹⁰⁾ 동일인 지정은 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기업집단 정의상 '사실상 지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분율 기준과 지배력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인이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율 기준'에 의해 해당 기업에 대한 동일인의 지배력이 인정된다. 지분율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동일인이 직접 혹은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9) 강상엽, "동일인 지정제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경쟁법연구」, 제20권 제2호(2021), 203면.

10) 서정, "기업집단의 동일인 확정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 제43권(2021), 236면.

을 행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지배력 기준'에 의해 동일인의 지배력이 인정된다. 지배력 판단기준에서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이유는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할 것이라는 공정거래법의 규범적 인식 때문이다.¹¹⁾ 현재 동일인관련자 범위에는 배우자, 4촌이내혈족, 3촌이내인척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지분을 기준과 지배력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동일인 지배력이 인정되므로, 동일인관련자 범위 확정은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¹²⁾ 공정위는 매년 5월 이 기준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및 기업집단 개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40여 개 법령에서 준용되므로 이 제도의 사회적 영향은 크다.¹³⁾ 동일인의 지정을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정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인이 지정되면 동일인관련자는 시행령에 따라 당연히 추출된다. 동일인관련자와 관련해서는 주로 기업집단에 대한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 관점에서 접근 및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지배력의 보조 측면 외에 사익편취 등 사후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제도적 의미도 크다. 다만, 본고에서 이에 대한 모든 관련 법령의 분석을 할 수 없어서 이 부분도 향후 다른 논문에서 개진하고자 한다.

동일인지정제도 도입 당시에는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총수일가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소유·지배 괴리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제도 역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일가를 식별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양적·질적으로 복잡화되었으며, 기업집단 영업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등 규제 환경이 크게 변하였다.¹⁴⁾

일례로, 규제 대상이 되는 대기기업집단 수는 1987년 32개에서 2022년 76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IT·바이오 등 플랫폼형 기업집단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배구조도 관찰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형제 간 왕래가 감소하고 있으며¹⁵⁾, 총수 사망 등으로 경영권이 2·3대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혈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규제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¹⁶⁾

11) 김봉철, 앞의 논문, 2009, 30면.

12) 강상엽, 앞의 논문, 2021, 205면.

13) 신영수, 앞의 자료, 2022, 2면.

14) 김봉철, 앞의 논문. 2021, 208면.

15) 진미정,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사회동향, 2021, 71면.

16) 2000년대 이후로 친족 간 경영권 분쟁이 총 8건 발생하였다. (2000년 현대, 2005년 두산, 2010년 금호, 2012년 삼성, 2014년 효성, 2015년 롯데, 2019년 한진, 2021년 한국엔컴퍼니) 김지홍,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범위의 조정 방향", 2022 제2차 서울대 경쟁법센터 법정정책세미나 자료집, 2022, 19면.

〈표 1〉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1.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혈족5촌·6촌 및 인척 4촌, 사실혼 배우자
2.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 출연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대출연자이거나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 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동일인이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5.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사용인

1. 현행법에 대한 검토

가.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동일인 규제에 대한 재고 필요성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한다고 전제하므로, 동일인관련자는 계열사 지분 소유정보 공개, 사익편취 규제 등 각종 사전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엄격한 사전규제는 입법적인 강력한 결단에 근거한 경우가 많은데 그 모태는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私的獨占禁止法)이 아닌가 한다.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私的獨占禁止法)은 미군정이 일본에서의 재벌해체를 강압적으로 하는 대신 일본이 자발적으로 재벌해체를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연합군 총사령부는 1945년 11월 6일 『지주회사의 해체에 대한 각서』를 통해서 재벌해체를 당면추진과제로 삼고, 이를 담당하는 지주회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미쯔이, 미쯔비시, 안도, 쓰미모토의 4대 재벌의 해체를 도모하였다.¹⁷⁾ 1946년 7월 23일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관한 명령 및 규칙에 대한 각서』에 의해서 제한회사에 의한 다른 회사의 증권보유제한, 제한회사에 의한 임원겸임 금지, 제한회사간의 경쟁제한적 거래금지를 명했다.¹⁸⁾ 그러나 이런 제한조치는 영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입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47년 3월 31일 제92대 일본제국의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었다. 이 법의

17) 谷原修信, 獨占禁止法要論[第3版], 中央經濟社 (2011) 41頁.

18) 谷原修信, 41頁.

명칭이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 '사적독점금지법'이다. 이 법은 1947년 4월 14일 공포되었다.¹⁹⁾ 재벌은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사전규제가 요구되었고 정당화되었다.

그런데 우리 법의 모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일반의 '사적독점금지법'상의 재벌규제 조항들은 이후 입법에서 해소되었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를 금지하던 조항도 해소되었고, 우리나라도 일본 사적독점금지법 이후에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2차세계대전 이후의 재벌규제(당시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사적독점금지법은 2002년 개정 등을 통해서 맥아더 군정시기 도입된 특유의 제도들을 삭제하였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합병규제 등으로 일반집중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집단규제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혁을 중심으로 보면, 대기업집단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인증제를 운용하는 우리 법제의 특이성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나.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현행 동일인지정제도는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할 것이라는 규범적 인식으로 동일인관련자 소유 지분을 동일인 소유 지분에 합산하여 동일인의 기업집단 내 지배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만 해도 현대(2000년), 두산(2005년), 삼성(2012년), 롯데(2015년) 그룹 등에서 친족 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런 현상은 현행 동일인관련자 범위에 속한 자들이 실제로 동일인에 대한 우호지분을 보유하여 기업집단 지배구조 유지에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을 나타낸다. 만약 모든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에 대한 우호지분을 보유하여 지배구조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면, 현행법의 전제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동일인관련자들이 우호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지배구조 유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현행법 전제의 타당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혈연이나 혼인에 의한 동일인 지배력 보조에 대한 판단은 오늘날과 같은 변화된 시대에서 실증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실무적으로 이혼이 잦아지고 있는 지금의 세대에서 혼인이 지배력을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추정은 실무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혈연의 경우에도 4촌이나 6촌이나 이런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 자체에 의문이 있다.

19) 谷原修信, 45頁.

다. 해금된 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규제 재고 필요성

지주회사는 일본에서 군산복합 재발방지를 위해 재벌해체 수단²⁰⁾으로 사용되었다가 해금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가 해금되었지만 규범적 철학에 있어서 지주회사제도와 동일인 규율은 상충한다. 일본 사적독점금지법은 93년에 정령에 의해 제2차 개정이 있었는데²¹⁾ 93년 개정시에도 제9호의 지주회사 금지는 여전히 확인된다. 이후 지주회사금지조항은 삭제되고, 일본 사적독점금지법상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제9조에 존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1)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러한 회사로 전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제9조), (2) 일정한 보고의무를 지며(제9조 제5항), (3) 지배력지침(事業支配力が過渡に集中することなる會社の考え方)을 제정하여, 세 유형의 과도한 사업지배력 집중형태를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²²⁾

그런데 애초에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는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로 규정한다. 이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회사이면 순수지주회사인지 사업지주회사인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²³⁾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특수한 산업에 대한 규율로만 존재하는 지주회사 규율이 경쟁법의 일부로 규율되는 것은 일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런데 애초에 지주회사는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 집단이라는 개념에서 동일인 규율을 한다면 지주회사는 그 자체가 동일인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2. 소결

이상의 각 점들을 고려한다면 일본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없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비교법적으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을 해서 동일인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연합군은 독일의 대기업들이 군사화한 것에 대해서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제한을 독일의 재군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장치로 사용하였다.²⁴⁾ 우리의

20) 일본의 군국화를 막기 위한 헌법적인 수단이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평화헌법 제9조라면, 실제적인 기능을 한 것이 사적독점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21) 平成5年7月23日政令第253号 [第二次改正].

22) 김건식, 송옥렬, 노혁준, “기업집단규율의 국제비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13면.

23) 이호영, 『독점규제법』 제7판, 홍문사, 2022, 186면.

24) 服部育生, 比較・獨占禁止法[第7版], 泉文堂(2007) 7頁.

공정거래법에 의한 재벌규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입법연혁에서 출발한다.

동일인 규제 자체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범위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실증적 뒷받침 없이 혈연이나 혼인, 고용관계 등을 기준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가정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현행법에 대한 검증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가 해금된 이상 최소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시민권을 준 이상 동일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인은 지주회사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 각 점에 대해서 장을 바꾸어서 논한다.

III. 동일인관련자 범위 분석

1. 중심성지수 방법론

본 연구는 동일인관련자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한다고 전제하는 동일인지정제도의 규범적 인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동일인관련자 범위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실행하였다.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이 동일인에 대한 우호지분인지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²⁵⁾, 우호지분을 식별하는 대신 시뮬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이 지배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를 산출한다. 동일인관련자 범위를 축소시켰을 때 기업집단에 대한 동일인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면, 범위에서 제외된 동일인관련자는 지배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 동일인에 우호적인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⁶⁾ 반면,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동일인 지배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범위에서 제외된 동일인관련자는 동일인에 대한 우호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동일인 지배력 변화는 Almeida et al. (2011)에서 제시된 중심성지수(이하 중심성지수)²⁷⁾²⁸⁾를 활용하여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다. 중심성지수에서 중심성

25)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지분일지라도 경영권 분쟁 등 이유로 동일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지분 보유 목적이 지배력 보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상엽, (2021). 동일인 지정제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경제법연구*, 20(2), 208.)

26) 재무적 투자자 활용 등과 같이 지분구조만으로 지배의 실질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으나,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지분율을 제외한 여타 지배력 평가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27) Almeida, H., Park, S. Y., Subrahmanyam, M. G., & D. "The structure and formation of business groups: Evidence form Korean chaebol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제99권 제2호(2011).

28) 중심성지수는 개체 간 연결성을 연구하는 방법론의 일종으로 지배구조 문헌에서 사용된 바 있다. 김우진·이은정·최난철현,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Centrality 적용 실증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법경제학연*

(centrality)의 의미는 지배구조상 중심에 위치한 정도를 나타낸다. 즉, 중심성지수는 지배구조상 최상단에 위치한 '핵심기업'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이다.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은 곧 핵심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므로 중심성지수를 활용하여 동일한 지배력 변화를 산출할 수 있다.²⁹⁾

구체적인 지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 기업집단포털의 내부지분율 및 총수일가 지분을 자료를 활용하여 식 [1]과 [2]의 내부지분율 행렬 A와 총수일가 지분율 벡터 f를 구한다.

$$A = \begin{bmatrix} 0 & s_{12} & \cdots & s_{1N} \\ s_{21} & 0 & \cdots & s_{2N}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s_{M1} & \cdots & s_{NV-1} & 0 \end{bmatrix}, s_{ij} \text{는 } i \text{기업이 보유한 } j \text{기업 지분} \quad [1]$$

$$\vec{f} = [f_1 f_2 \cdots f_N]' \quad [2]$$

식 [3]에서, 임의의 지배 임계치 T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집합 C(T)를 구한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이 해당 기업의 지배 임계치를 넘으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가정하며, 집합 C(T)는 지배 임계치 T에 대해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C(T) = \left\{ i \in n : f_i + \sum_{j \in C(T), j \neq i} s_{ji} \geq T \right\} \quad [3]$$

식 [4]와 같이 i기업이 C(T)에 남아있도록 하는 최대 지배 임계치 T값을 구한다. Almeida et al. (2011)는 이를 Critical Control Threshold (이하 CC_i)로 정의하였다.

$$CC_i = \max\{T | i \in C(T)\} \quad [4]$$

구」, 제17권 제3호(2020), 561-584면; 박찬규, “사회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이용한 기업집단 소유네트워크 분석”, 「경영과학」, 제32권 제2호(2015), 15-35면; 전진규 & 박찬규, “재벌 내 계열사의 중심성과 신용등급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연구」, 제32권 제1호(2019), 33-53면; Park, C. K., Lee, C., & Jeon, J. Q., “Centrality and corporate governance decisions of korean chaebols a social network approach”,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제62권(2020), 1-24면.

29) 중심성지수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계열사 평균 출자율 중 더 낮은 값에 영향을 받는다. 즉, 총수일가 지분율(간접 지분 포함)이 높더라도 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없어 계열사 평균 출자율이 0인 경우 중심성지수는 0이 된다. 이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핵심회사(최상위기업)의 정의에 부합한다. 지배구조상 핵심기업은 동일한 입장에서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중요한 기업이므로, 동일인의 지배력이 높으면서도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가 많은 기업이 핵심회사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j 기업이 지배구조에서 부재할 때를 가정하여 지배구조 변화(CC_i 의 변화)를 측정한다. j 기업이 있을 때의 CC_i 합에서 j 기업이 부재할 때의 CC_i 합을 빼준 후, 이를 j 기업을 제외한 계열사의 수로 나누어 중심성지수를 구한다. 중심성지수는 j 기업이 지배구조에서 부재할 때 평균 CC_i 의 변화량이므로, 이는 j 기업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는 상대적 중요도로 해석할 수 있다.

$$central_i = \frac{\sum_{j \neq i} CC_j - \sum_{j \neq i} CC_j^{-i}}{n - 1}, \text{ n은 기업 수} \quad [5]$$

지수 산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아래 [그림 1] 기업집단의 행렬 A와 벡터 f를 구하면 식 [6]과 같다.

$$A = \begin{bmatrix} 0 & 0.5 & 0 \\ 0 & 0 & 0.4 \\ 0.3 & 0 & 0 \end{bmatrix}, \vec{f} = \begin{bmatrix} 0.2 \\ 0.15 \\ 0.1 \end{bmatrix} \quad [6]$$

지배 임계치 T가 15% 이하일 때는 총수일가가 기업 A와 B를 모두 지배할 수 있으므로 기업 A, B가 보유한 기업 C의 지분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는 기업 A와 B를 지배함으로써 기업 C의 직접 지분 10% 및 간접 지분 40%를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하는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므로(50% > 15%) 기업 C를 지배할 수 있다. 반면, 지배 임계치 T가 15% 초과일 때는 기업 B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기업 B가 보유한 기업 C의 지분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 C에 대해 총수일가가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은 직접지분율인 10% 밖에 되지 않아, 통제 지분율(10%)이 지배 임계치 T(T > 15%)보다 낮아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총수일가 입장에서 기업 C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지배 임계치는 15%이다. 즉, 기업 C가 집합 C(T)에 남아있도록 하는 최대 지배 임계치는 15%이므로 $CC_C = 15\%$ 이다. 같은 방식으로 기업 A와 B를 계산하면 CC_A 와 CC_B 는 각각 20%가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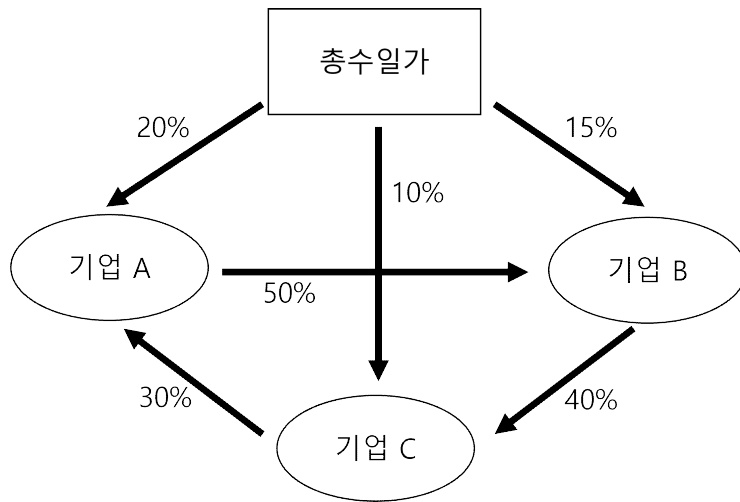
기업 A의 중심성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기업집단에서 기업 A가 없을 때의 CC_i 가 필요하다. 기업 B와 기업 C의 CC_i^{-A} 를 구해보면, $CC_B^{-A} = 15\%$ 이고 $CC_C^{-A} = 15\%$ 가 됨을 알 수 있다. 식 [7]에서와 같이 중심성지수는 기업 A가 기업집단에서 제외됐을 때 CC_i 의 평균 감소량이 된다. A 기업의 중심성지수는 2.5%이며, 같은 방식으로 기업 B와 기업 C의 중심성지수가 각각 2.5%, 0%가 됨을 알 수 있다.

$$cent_A = \frac{(CC_B + CC_C) - (CC_B^{-A} + CC_C^{-A})}{N - 1}$$

$$= \frac{(20\% + 15\%) - (15\% + 15\%)}{3 - 1} = 2.5\%$$

[7]

[그림 1] 기업집단 예시



2. 동일인관련자 범위 분석

가. 지분구조 현황

<표 2>는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3개 계열회사의 지분구조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동일인은 평균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뒤이어 배우자·혈족 1촌이 2.7%, 혈족 2~4촌이 1.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 범위별 지분을 분포의 75% 백분위수는 모두 0이고, 95% 백분위수는 동일인과 임원을 제외하면 모두 0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분이 상위 10% 내외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시사한다.

<표 2> 지분구조 현황

(단위 : %)

	동일인	배우자·혈족 1촌	혈족 2-4촌	혈족 5-8촌	4촌 이내 인척	비영리 법인	임원
mean	5.4	2.7	1.9	0.3	1.2	0.5	2.4
90%	7.89	0	0	0	0	0	0.08
75%	0	0	0	0	0	0	0
StDev	19.4	13.8	11.2	4.3	9.7	5.3	11.9
obs	2,613	2,613	2,613	2,613	2,613	2,613	2,613

출처: 기업집단포털

나. 동일인관련자 지배구조 기여도

본 절에서는 동일인관련자별 지배력 보조 수준을 산출하여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지배력 보조 수준은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우호지분을 동일인 지분에 합산하였을 때 중심성지수 변화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심성지수는 동일인 지분율과 계열사 평균 출자율의 함수이므로, 계열사 출자율이 높은 핵심회사의 지분율이 높아진다면 그 회사의 중심성지수가 증가할 수 있다.³⁰⁾ 반대로 계열사 출자율이 낮은 비핵심회사 지분을 추가로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성지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즉,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을 동일인 지분에 합산하여 중심성지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동일인관련자 지분이 지배구조에 기여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산출할 수 있다.

$$\text{중심성지수} \approx \min(\text{동일인 지분율}, \text{계열사 출자율}) \quad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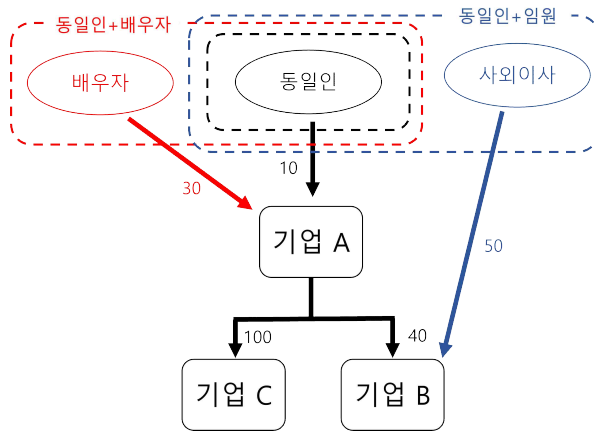
동일인관련자 범위는 배우자·혈족 1촌, 혈족 2~4촌, 혈족 5~6촌, 4촌 이내 인척, 임원으로 구분하였다.³¹⁾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인관련자별로 지분율 분포가 상이하므로 명확한 한계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변화량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심성지수 변화량을 동일인관련자 지분율로 나누고, 이를 동일인을 위한 지배유지 기여도(Contribution to

30) 일반적으로 계열사 평균 출자율보다 동일인의 직·간접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중심성지수는 동일인 지분율의 함수로 볼 수 있다.

31) 2021년 기준 71개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60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중심성지수를 산출하였다.

Same-Person's Control, CSPC)로 정의한다. CSPC 산출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림 2] 기업집단의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CSPC가 높게 나올 것이다. 기업 A는 기업 B, C를 지배하는 핵심기업이다. 즉 동일인은 기업 A를 지배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할 수 있으며, 그 지배력을 영위하기 위해선 기업 A에 대한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기업 A에 대한 배우자 지분을 30%를 동일인 지분에 합산하면 식 [8]에 따라 기업 A의 중심성지수가 증가하고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동일인의 지배력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업 C에 대한 사외이사 지분을 50%를 동일인 지분에 합산하면 기업 C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하지만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진 못한다. 따라서 배우자 CSPC가 사외이사의 그것보다 더 높다.

[그림 2] 우호지분 예시



CSPC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식 [2]에서 구한 동일인 직접지분을 벡터 \vec{f} 에 동일인관련자 직접지분을 벡터 \vec{v} 를 더하여 새로운 직접지분을 벡터 \vec{f}^* 를 구한다.

$$\vec{f}^* = \vec{f} + \vec{v}, \text{ where } \vec{v} = [v_1 v_2 \dots v_n]' \tag{9}$$

다음으로, \vec{f} 대신 \vec{f}^* 을 대입하여 식 [3]부터 식 [5]까지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central^*$ 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central^*$ 에서 $central$ 를 빼준 값을 기업집단별로 합한 후, 동일인관련자의 합산 지분율로 나누어 CSPC를 산출한다.

$$CSPC = \frac{\sum_{k=1}^N \sum_{i=1}^N central_{ik}^* - central_{ik}}{\sum_{k=1}^N \sum_{i=1}^N v_{ik}}, \text{ N은 기업집단 수} \quad [10]$$

다. 전체 기업집단 CSPC 분석

전체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척·임원 CSPC는 배우자·혈족1~4촌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척·임원은 지배구조 유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을 보면 배우자·혈족1촌 CSPC가 0.135로 가장 높고, 임원의 CSPC가 -0.004로 가장 낮았다. 인척·임원은 혈족5~6촌보다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성지수 변화량이 크지 않으므로, 인척·임원 보유 지분이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일인관련자가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기업집단을 공동지배한다고 보는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척·임원 CSPC는 지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범위에서 제외된 혈족5~6촌의 그것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³²⁾ <표 3>에서 혈족5~6촌 CSPC는 0.045이고, 인척과 임원의 그것은 각각 0.027과 -0.004이다. 공정위는 동일인관련자 범위 축소 이유를 ‘동일인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밝힌 바 있다.³³⁾ 혈족5~6촌이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척·임원의 CSPC가 혈족5~6촌의 그것보다 더 낮으므로 인척·임원도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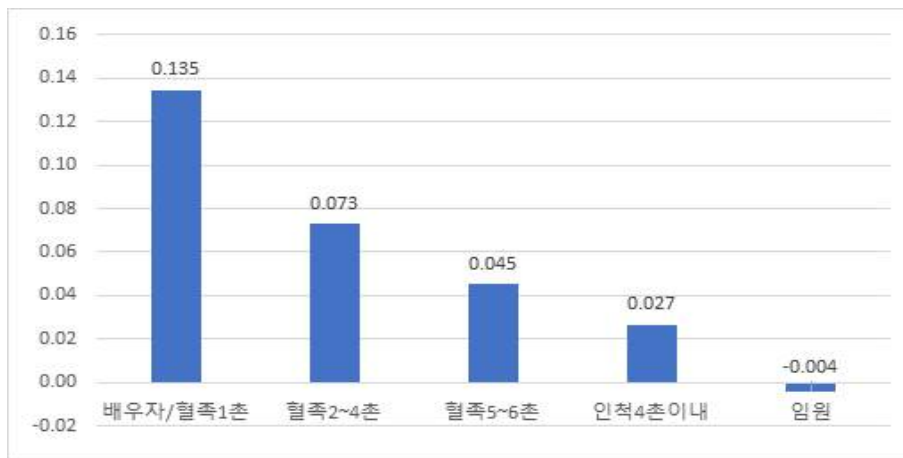
32) 혈족5~6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혹은 이들이 동일인 및 다른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관계에 있는 경우 동일인관련자 범위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혈족 5~6촌을 유추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이0촌(혈족5촌)·이0호(혈족6촌)는 대우컴바인(주)을 각각 70%·3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개정 즉시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이은정, “공정거래법 상의 친족범위 축소에 따른 규제회피 가능성과 그 대안”, 이슈 & 분석, 2022, 2면.) 동일인관련자 범위에 제외되는 혈족과 그렇지 않은 혈족을 구분하여 CSPC를 계산한 결과,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혈족 5~6촌의 CSPC(0.73)가 범위에 남아있는 혈족의 그것(0.02)보다 높았다.

33)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개정이유(2023.05.26. 방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227&lsiSeq=246939#0000>>

〈표 3〉 전체 기업집단 동일인관련자별 지수기여도

	배우자 혈족 1촌	혈족 2~4촌	혈족 5~6촌	인척 4촌 이내	임원
중심성지수 변화량	948.06	359.89	32.05	86.10	-25.28
합산 지분율 (%)	7,040	4,946	712	3,243	6,029
CSPC	0.135	0.073	0.045	0.027	-0.004

[그림 3] 동일인관련자별 기여도



IV. 지주회사제도와 동일인지정제도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동일인지정제도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는 법인(지주회사)을 기업집단 정점으로 보는 법제로서, 기업집단 지배자를 정의하는 관점에서 동일인지정제도의 규범적 인식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정제도 역시 기업집단 정점으로 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만일 다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면 이같은 동일인지정제도의 규범적 인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본 절은 지주회사제도의 개관을 살펴본 후 중심성지수와 다양성지수를 활용하여 2001년 이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1. 지주회사제도 개관

1987년 경제력집중 억제에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집단 투명성 제고 및 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었다.³⁴⁾ 현행법상 지주회사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그중에서도 기업집단에 대한 일반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³⁵⁾ 설립규제와 행위규제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규제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신고(공정거래법 제17조), 지주회사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전환 시 채무보증 해소(공정거래법 제19조) 등이 있다. 설립규제는 지주회사를 신고하도록 하고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덧붙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진다. 행위규제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자회사주식보유기준(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등의 제한(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금산분리(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의무(공정거래법 제18조 제7항) 등이 있다. 행위규제는 지주회사의 지배권 취득 및 행사 등을 규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진다.

〈표 4〉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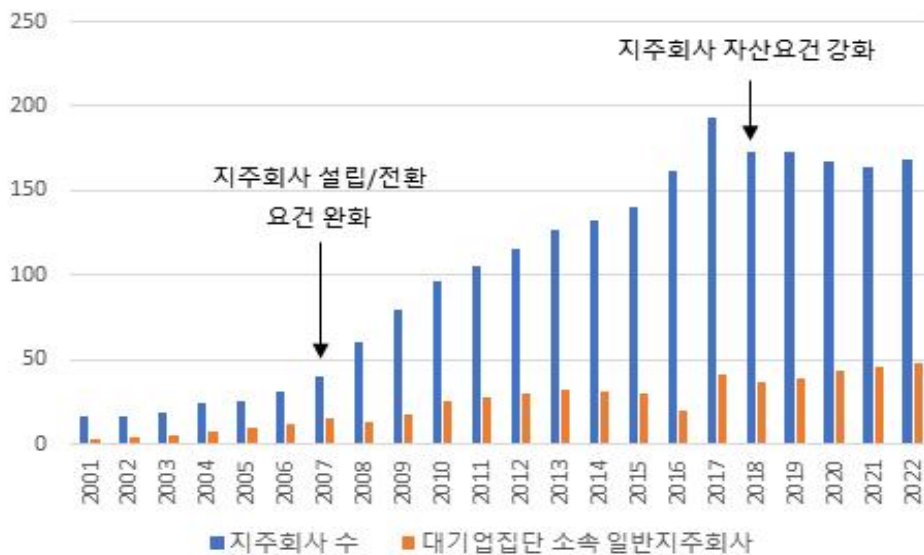
구분	지주회사 규제 변화
1986년 12월	· 지주회사의 원칙적 금지
1999년 2월	·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 및 행위제한 부과
2002년 1월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유예기간(1년) 신설
2004년 12월	· 지주회사 유예기간 신설·확대 · 지주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개정
2007년 4월	·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의 완화 -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 완화(50%-40%) -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 완화(100%-200%)
2007년 8월	· 손자회사 규제의 개정 -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 시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 - 증손회사의 예외적 주식보유 허용
*2020년 12월	·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요건 강화(40%-50%)

출처: 홍명수, “경제력집중 정책의 변화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2021).
* 저자 추가

34) 정도진, “지주회사전환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및 지배구조투명성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2호(2008), 768면; 박종국, 김은호, 홍영은, “지주회사 전환과 회계투명성”,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4호(2011), 2142면; 엄수진, “국내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현황 및 사례”, CG리뷰, 제75권(2014), 30-31면.
35) 이황,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일반집중의 문제”,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2021), 243면.

1999년 지주회사 설립 허용 이후로 지주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주회사 수는 2001년 17개에서 2008년 60개, 2017년 193개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부터 지주회사 수 증가세는 둔화되었는데, 이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³⁶⁾ 기업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의 수는 2017년 39개에서 2022년 47개로 증가했다. [그림 5]를 보면, 지주회사 지배구조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³⁷⁾ 수도 2005년 5개에서 2015년 15개, 2022년 29개로 증가해왔으며 2022년 기업집단의 38%가 지주회사 지배구조 체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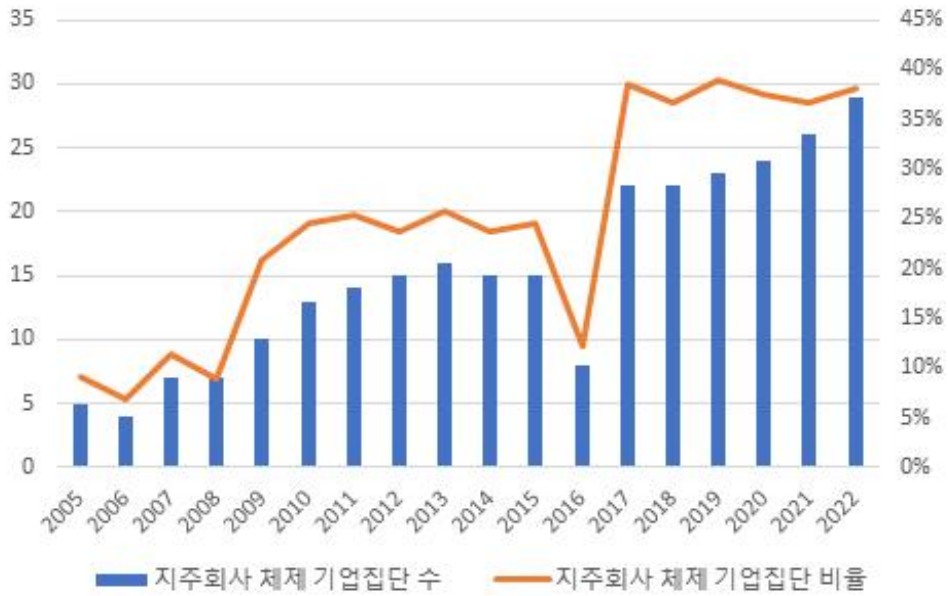
[그림 4] 2001년~2022년 지주회사 수 추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36) 2017년 7월 1일부터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37) 지주회사 및 소속 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지주회사 현황 분석", 2017.11.02)

[그림 5]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수 추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 기업집단 지배구조 변화 분석

중심성지수는 수학적으로 타 계열사에 대한 출자율이 높고 출자고리가 많을수록 높아지게끔 설계되어있다. 즉, 많은 자회사를 지배하는 기업일수록 중심성지수가 높게 산출된다.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채택한 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에 지배권을 집중시키므로, 지주회사를 제외한 계열사들은 중심성지수가 하락한다. 예를 들어, 롯데그룹은 2012년까지 존재하던 상호·순환출자 고리를 2021년 상당부분 해소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중심성지수가 증가하고 자회사의 중심성지수가 감소하였다.³⁸⁾ (<표 5> 참고)

38)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를 제외한 핵심 사업회사(롯데알미늄,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쇼핑)의 중심성지수가 모두 하락하였다.

〈표 5〉 롯데그룹 핵심기업 중심성지수

	롯데알미늄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지주 (구 롯데제과)
2011년	2.69	1.52	0.63	7.65	0.63
2021년	0.00	0.48	0.16	2.88	6.98

주: 2017년 롯데제과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법인을 롯데지주로 신설 법인을 롯데제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 등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각 회사의 투자부문을 롯데지주에 합병시켰다.

가. 중심성지수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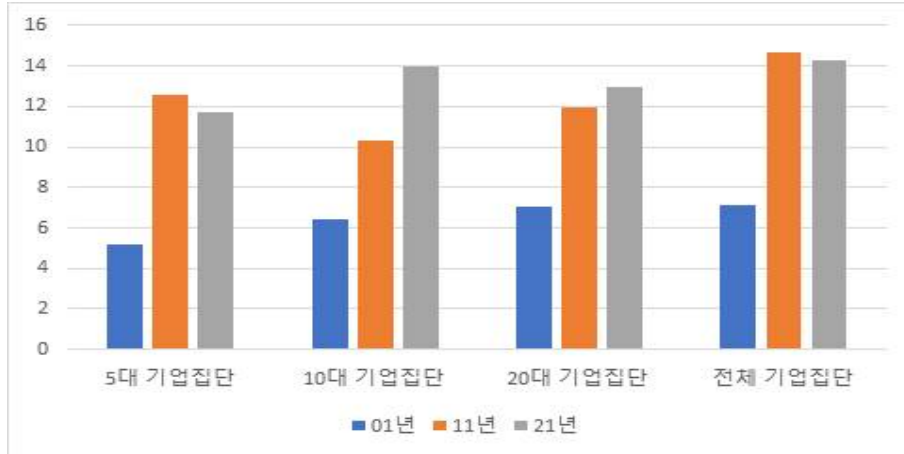
우선 [그림 6]에서 최상위회사(중심성지수가 가장 높은 기업, 이하 Top1기업) 중심성지수 증가 여부를 보면, 전체 기업집단 Top1기업의 평균 중심성지수가 2001년 7.1에서 2011년 14.7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14.3으로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로 10년간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하게 발생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 전환 속도가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Top1기업에 대한 중심성지수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 [그림 7]을 보면 Top1기업과 Top2기업의 중심성지수 차(이하 괴리율)³⁹⁾는 2001년 63%에서 2011년 74.8%, 2021년 133%로 증가하였다. 기업집단 순위별로 구간을 나누어 괴리율을 구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⁴⁰⁾ Top1기업의 중심성지수가 증가한 동시에 괴리율도 높아졌으므로 최상위회사에 대한 지배력 집중 현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¹⁾

39) (Top1 기업 중심성지수 - Top2 기업 중심성지수) / (Top2 기업 중심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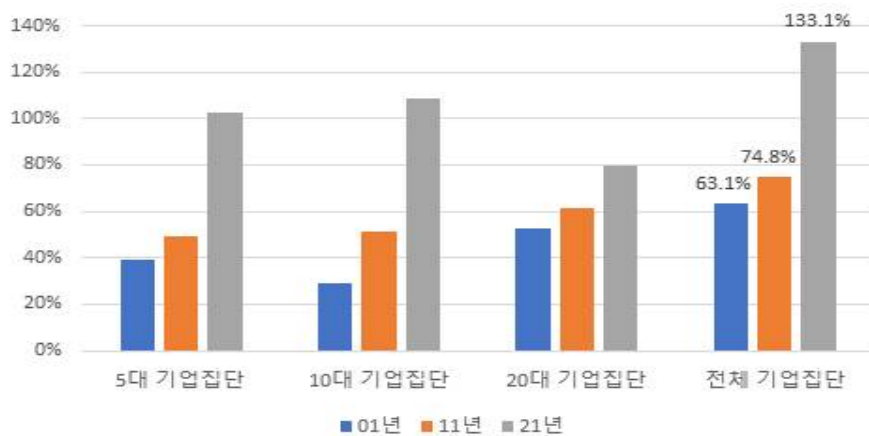
40) 기업집단별 순위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나열하였다. 2011년 기준 5대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롯데이며, 2021년에도 이 순위는 변동되지 않았다. 2011년 10대 기업집단은 5대 기업집단 및 현대중공업·지에스·한진·두산·금호아시아나이며 2021년에는 금호아시아나와 두산이 제외되고 씨제이와 신세계가 그 자리를 대체하였다.

41) 이는 김우진·이은정·최난설현(2020)에서 제시한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우진·이은정·최난설현, 앞의 논문, 2020, 566-567면)

[그림 6] Top1 기업 평균 중심성지수 추이



[그림 7] Top1-Top2 괴리율



나. 사년의 다양성 지수

앞선 분석은 중심성지수 상위 그룹(Top1, Top2)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배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계열사의 중심성지수 분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년의 다양성 지수(Shannon Wiener Diversity Index)를 활용한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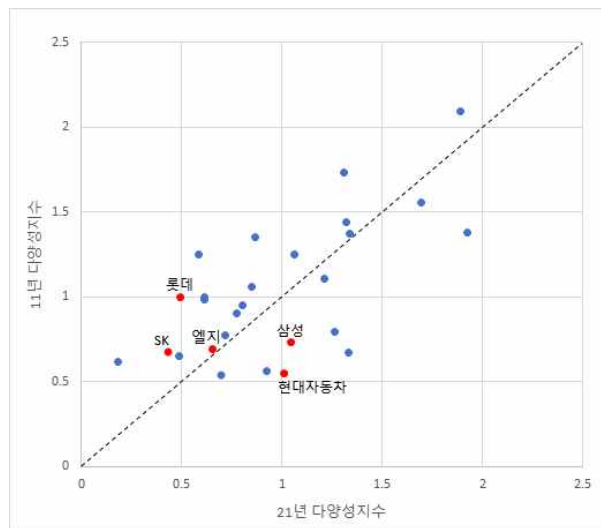
42) Shannon, C. E.,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The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제27권 제3호(1948).

샤년의 다양성지수는 군집에 얼마나 다양한 개체가 분포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수이다. 종의 종류가 많고(풍부성, richness) 분포 비율이 균일할수록(균일성, evenness) 다양성지수가 높다. 계산 식은 아래 식 [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지수의 분포비율을 p_i 로 두어 중심성지수 분포 변화를 측정한다. 예컨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권을 지주회사에 집중시키므로 중심성지수가 0이 되는 비핵심기업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⁴³⁾ 즉 기존 상호·순환출자 기반의 지배구조에서 지주회사 체제 지배구조로 전환할 경우, 중심성지수 분포가 0 부근으로 집중되고 다양성지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다양성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지배구조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H = - \sum_{i=1}^n p_i \ln p_i, \quad p_i \text{는 분포비율} \quad [8]$$

[그림 8]은 2021년과 2011년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7개 기업집단의 다양성지수 분포표다. 점선 하단에 위치한 기업집단은 다양성지수가 증가한 기업집단이고, 점선 상단에 위치한 기업집단은 다양성지수가 감소한 집단이다. 2011년에 비해 2021년 다양성지수가 감소한 기업집단 수(18개 기업집단)가 지수가 증가한 기업집단 수(9개 기업집단)보다 많다. 자산총액 기준 5대 기업집단에서는 3개 기업집단(롯데·에스케이·엘지)의 다양성지수가 감소하였으며, 2개 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의 다양성지수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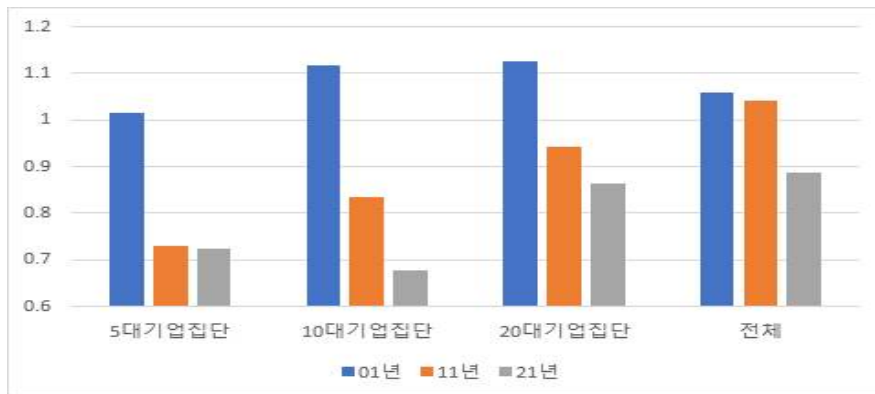
[그림 8] 기업집단 다양성지수 분포



43) 타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없는 기업은 중심성지수가 항상 0이다.

[그림 9]는 평균 다양성지수 추이를 나타낸다. 다양성지수는 2001년 1.06에서 2021년 0.89로 감소하였다. 상기 언급한대로 다양성지수 감소는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집단 순위별로 구간을 나누어도 모든 집단에서 다양성지수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앞선 괴리율 분석과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9] 평균 다양성지수 추이



다.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동일인지정제도는 자연인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된다고 전제하고 있어,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은 대체로 그 자연인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장려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인지정제도의 규제환경이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져, 기존의 사전적(출자규제, 행위제한 등)이고 포괄적인(기업집단 자산 총액 기준, 동일인관련자 친족 기준 등) 규제방식을 재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있다면 해당 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여, 통상 자연인을 지배구조 정점으로 보던 기존의 규범적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지되었던 지주회사가 해금되고 지주회사가 오히려 정부에 의해서 촉진되었던 규제연혁을 생각한다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동일인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요컨대 상호·순환출자 등으로 분산되었던 지배권이 지배구조 내 핵심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정부의 지주회사 장려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하에서 기업집단 정점을 자연인으로 보는 기존 동일인지정제도의 규범적 인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총수일가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재벌2·3세로의 경

영권 승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을 기업집단 정점으로 보는 규범적 인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지주회사 형태의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주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의 경우에 지주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면 지주회사 방식을 취한 기업집단에서 모든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도 지주회사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이런 방식에 대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입법기술적으로 지주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정하면 복수의 지주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를 동일인으로 정해서 그 동일인을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를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면서 해결가능한 과제로 본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론 중 하나인 중심성지수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지수화(indexing)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배우자·혈족1~4촌에 비해 인척·임원이 보유한 지분은 지배구조 유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일인관련자를 동일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자로 보는 공정거래법의 규범적 인식이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22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된 혈족5~6촌 ‘지배구조 기여도’보다 인척·임원의 그것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적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둘째, 지난 20년간 정부가 지주회사 유도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상당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배구조 정점을 자연인으로 보기 때문에⁴⁴⁾ 그 자연인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핵심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집단 수 증가, 친족 간 경영권 분쟁 증가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자연인을 지배구조 정점으로 보는 규율방식 대신 핵심기업 위주로 지배구조를 재편한, 특히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법인을 동일인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부당지원행위 규제 등 여러 제도 및 법령에서 동일인지정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바, 타 법령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익편취행위 규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

44)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동일인관련자 범위에 친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동일인은 자연인을 지정대상으로 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영수, 위의 자료, 2022, 5면.

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일인지정 및 동일인관련자 범위 확정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⁴⁵⁾ 따라서 현행 동일인지정제도의 과급효과를 고려하여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23. 6. 2. / 심사개시 : 2023. 7. 10. / 게재확정 : 2023. 7. 19.)

45) 신영수, 앞의 자료, 2022, 8-9면.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상엽, “동일인 지정제도 :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의 비판적 검토”, 「경쟁법연구」, 제20권 제2호(2021)
- 권오승,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6호(2019)
- 김건식·송옥렬·노혁준, “기업집단규율의 국제비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8)
- 김봉철, “경제/기업법령상 친족인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법논집」, 제33권 제4호(2009)
- 김우진·이은정·최난설현,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Centrality 적용 실증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3호(2020)
- 김지홍,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범위의 조정 방향”, 2022 제2차 서울대 경쟁법센터 법정책 세미나 자료집 (2022)
- 박종국·김은호·홍영은, “지주회사 전환과 회계투명성”,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4호(2011)
- 박찬규, (2015). “사회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이용한 기업집단 소유네트워크 분석”, 「경영과학」, 제32권 제2호(2015)
- 서정, “기업집단의 동일인 확정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 제43권(2021)
- 송태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출자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일고”. 동아법학 69권(2015).
- 신영수, “대기업집단 동일인/동일인관련자에 대한 법/정책적 쟁점과 과제” 공정거래정책연구회 (2022)
- 염수진, “국내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현황 및 사례”, CG리뷰, 제75권(2014)
- 위평량,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그 동태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개혁리포트 (2018)
- 이은정, “공정거래법 상의 친족범위 축소에 따른 규제회피 가능성과 그 대안”, 이슈 & 분석 (2022)
- 이호영, 『독점규제법』 제7판, 홍문사 (2022)
- 이황,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일반집중의 문제”,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1).
- 전진규·박찬규, “재벌 내 계열사의 중심성과 신용등급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연구」, 제32권 제1호(2019)
- 전찬수, “‘동일인’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1호 (2022)
- 정도진, “지주회사전환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및 지배구

- 조투명성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2호(2008).
- 주진열.“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및 대기업집단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ERI Insight, 2021(3)(2021).
- 진미정,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사회동향, (2021)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및 주가등락 분석”, (2018)
- 홍명수, “경제력집중 정책의 변화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2021)

[해외문헌]

- 服部育生, 比較·獨占禁止法[第7版], 泉文堂(2007)
- 谷原修信, 獨占禁止法要論[第3版], 中央經濟社 (2011)
- Almeida, H., Park, S. Y., Subrahmanyam, M. G., & D. “The structure and formation of business groups: Evidence form Korean chaebol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제99권 제2호(2011).
- Bae, K. H., Kang, J. K., & Kim, J. M, “Tunneling or value added? Evidence from mergers by Korean business groups”, The journal of finance, 제57권 제6호(2002)
- Claessens, Stijn, Simeon Djankov, and Larry HP Lang,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제58권 제1-2호(2000).
-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 de Silanes, and Andrei Shleifer,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The journal of finance」, 제54권 제2호(1999).
- Park, C. K., Lee, C., & Jeon, J. Q., “Centrality and corporate governance decisions of korean chaebols a social network approach”,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vol 62(2020)
- Shannon, C. E.,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The Bell system technical journal」, 27-3(1948).

Abstract

An Centrality Index Analysis of the Same Person Related Party Designation

Ji, Inye-Ob
Choi, Sung-Jai
Lee, Jun-Hyeong

South Korea introduced the same person designation rule to curb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1980s under which a natural person, most often the largest shareholder, is designated to be the actual controlling shareholder of a conglomerate group. Further,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designates a wide range of common shareholders including a certain members of family lineage, executives and other related parties as parties related to the same person. This rule imposes considerable onus on the designated parties such as periodic reporting of shareholding and criminal penalties for non-compliance. As the same person designation rule has been in force for more than forty years, we investigate whether the normative perception of the rule is still valid by using an algorithm analysis; that is, the centrality index.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shareholding of the parties related to the same person does not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ontrolling power of the same persons except that of the same persons' spouses and close relatives, which we argue calls for a more realistic regulatory approach. We also suggest that the limited role of the parties related to the same person may have resulted from the Korean antitrust policy that has encouraged conglomerates to adopt a holding company system structure.

Key Words : The Same-Person, The Same-Person Designation Rule, Centrality Index, Economic Concentration, Business Group